

소년폭력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형사사법기관의 역할과 한계

최 병 각*

국문요약

소년폭력사건의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폭력소년에 대한 처우이다. 최종적인 제재를 형벌로 하느냐, 보호처분으로 할 것인가가 우선적인 문제이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폭력소년의 재범을 막고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는 일이 급선무이다. 최근에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에서 보여주고 있는 개혁의 움직임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폭력소년의 재사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종합적, 체계적 관점에서 최적의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소년비행과 소년사범의 영역에서 눈부신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론과 실무의 괴리, 원인과 대책의 절연, 국가부문과 민간부문의 충돌,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의욕과 현실의 간극 등이 꾸준히 문제되고 있다. 이 글에서 제기한 문제, 즉 소년폭력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며 나아가 민간소년보호단체와의 관계설정은 어떠해야 하는가의 문제도 하루 이틀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소년폭력의 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03-B00328)

*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I. 들어가는 말

폭력범죄를 성인이 범한 경우와 소년이 그러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그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폭력은 어디까지나 폭력인 것이다.²⁾ 그러나 소년폭력은 그 원인부터 달리 파악되고,³⁾ 대책 또한 달라져야 한다. 왜냐하면 소년은 아직까지는 소년이기 때문이다.

소년이 폭력을 행사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면 그 자체가 비행 내지 범죄이다. 더욱이 폭력은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거나 범죄경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폭력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그 소년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 아울러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년에 의한 폭력으로 말미암은 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배경으로 관여할 때 그 수위와 정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폭력적인, 그러나 별무효과의 간섭이 될 수 있다. 오히려 구체적인 경우에 문제해결을 민간영역에, 또는 비형사적 수단에 맡기는 것이 보다 적합한 대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형사사법기관의 임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2)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①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폭력, ② 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폭력, ③ 범죄수단으로서의 폭력, ④ 쾌락추구를 위한 폭력, ⑤ 권위주의적인 폭력, ⑥ 정신파탄에 의한 폭력 등으로 구분하는 견해는 이문웅, “폭력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관한 탐색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2권 제3호, 1991, 209면. 한편 우리 사회에는 개념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에서의 폭력은 거부하나 구체적인 폭력행위 중 상당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증화되거나 합리화되는 기제가 있다는 관점에서 970명을 조사한 결과 범조인, 경찰, 대학생, 일반인 등 집단별로 폭력 유형, 폭력 허용도 및 폭력에 대한 태도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는 김준호, “폭력에 대한 국민의식 및 태도”, 형사정책연구, 제2권 제2호, 1991, 42-43면.

3) 강동욱, “학교폭력의 원인에 관한 고찰: 일본에서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형사정책, 제11호, 1999, 282-283면.

이 글에서는 소년폭력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형사사법기관의 역할과 한계를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구명하는 것을 목표로 소년폭력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기존의 연구성과 및 논의에 바탕하여 우리의 형사실무에서 경찰, 검찰, 법원 등 각 형사사법기관이 소년 폭력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어떠한 권한과 임무를 부여받고 있으며, 실제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은 어떠한지, 아울러 폭력소년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나 소년보호를 지향하는 민간단체와의 협력 또는 갈등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를 실증적인 조사를 통해서 고찰한 다음, 소년폭력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기관이 과연 언제 어떻게 개입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나아가 폭력소년의 성공적인 재사회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핵심적인 착안점들을 제공하기로 한다.

II. 소년폭력과 형사사법

1. 소년폭력의 원인과 대책

무엇보다도 소년폭력은 가정폭력의 연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⁴⁾ 그리고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 소년폭력⁵⁾은 왕따⁶⁾나 체벌⁷⁾과 연결되

4) 중고등학생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의 피해경험이 가정환경이나 자기통제력과는 독립하여 피해소년의 폭력범죄를 조장하는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기광도,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청소년범죄간의 관계분석”, 피해자학연구, 제13권 제2호, 2005, 229-231면. 또한 장덕희, “가정폭력경험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8권 제2호, 2001, 229-259면; 이경은/장덕희, “가정폭력경험이 청소년의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폭력범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7권 제1호, 2000, 95-123면; 민수홍, 가정폭력이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참조.

5) 남자 고등학생 7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 부적응, 학교 가기 싫음, 공부 흥미

기도 한다. 이처럼 폭력소년은 성인 폭력범과는 달리 단순히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폭력의 희생자인 경우가 매우 많다.⁸⁾ 또한 매우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소년이라도 폭력성향이 아직은 고착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⁹⁾ 그러나 폭력소년이 성인이 되어서도

없음 등의 학교에서의 긴장이 지역사회나 가정에서의 긴장에 비하여 청소년폭력비행에 매우 큰 영향력을 나타냈고, 특히 말다툼, 몸 부딪힘, 의견충돌 등의 상황에서의 분노 정도에 매개되지 않고도 폭력비행의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는 이성식, “청소년폭력 비행에 있어 일반긴장이론의 검증: 상황론적 논의를 통해”, 형사정책, 제15권 제2호, 2003, 98면.

- 6) 왕따현상은 가해자나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보다 소속집단 전체의 동조/거부 분위기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이훈구/홍영오, “한국인의 왕따 현상의 특징 - 학교폭력의 행위결정과정: Fishbein이론의 적용”,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2호, 2002, 120면; 노성호, “집단따돌림을 통한 피해와 그 영향”, 피해자학연구, 제9권 제2호, 2001, 23면; 노성호, “연결망 분석을 통한 집단따돌림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11권 제1호, 2000, 85면.
- 7) 체벌의 특별한 정당화사유인 교육법규의 체벌관련규정은 모두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그 전에는 체벌에 관한 현행 규정이라도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윤용규, “교원의 학생체벌에 대한 형법적 고찰”, 형사법연구, 제21호, 2004/여름, 154면.
- 8) 중학생 3,4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놀림/조롱, 헐뜯, 집단따돌림, 폭행, 뺨뺨기 등의 폭력피해를 당한 학생이 피해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하여 가해행위를 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차이로 높다는 연구결과는 박순진, “청소년 폭력비행에 있어서 가해-피해의 연계”, 피해자학연구, 제13권 제2호, 2005, 256면. 또한 이들 가운데 3,209명을 대상으로 1년후 조사한 결과 폭력의 가해·피해 경험이 없다는 학생의 비율이 59.5%에서 80.3%로 크게 늘어났고, 가해행동이 이전의 가해행동과는 관련이 있으나 이전의 피해경험보다 같은 시점의 피해경험과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는 박순진, “청소년 폭력비행에 있어서 피해 - 가해 연계의 변화”,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2006, 82면. 한편 중고등학생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형제 이외의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범죄 및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과 피해경험만 있는 집단은 비교적 범죄유발 및 범죄기회요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범죄-피해집단 및 범죄집단은 범죄유발 및 범죄기회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범죄집단보다 범죄-피해의 중첩집단이 범죄유발환경이 열악하거나 범죄기회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는 기광도, “범죄 및 피해의 중첩성에 관한 분석”, 피해자학연구, 제12권 제2호, 2004, 292-294면. 남자 고등학생 7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폭력비행의 경험을 가진 학생이 폭력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는 노성호/이성식, “청소년 폭력범죄피해요인에 관한 일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1권 제2호, 2003, 44-46면.
- 9) 소년보호기관에 수용된 소년 9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폭행의 재범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행친구정도, 과거 폭력관련 문제행동의 경험여부, 첫 범

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적지 않다.¹⁰⁾ 보다 심각하게는 소년폭력이 조직폭력의 재생산 기반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¹¹⁾

우리말에 “애들은 싸우면서 크다”고들 한다. 액면 그대로 이해하자면 애들끼리 싸우는 것은 커가는 과정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¹²⁾ 굳이 크게 문제삼을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사실 장난으로 그칠 수 있는 일을 두고 소년폭력 운운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무릇 소년비행의 문제는 비행소년 본인이나 비행소년을 둔 가족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소년비행은 학교, 직장, 지역 등 사회 전체의 문제이자 나아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¹³⁾ 하지만 모두의 문제는 어느 누구의 문제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는 말에서 보듯이 잘못 개입하여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결과가 야기될 수도 있다. 특히 국가기관의 개입은 자칫 “굵어 부스럼”이 될 소지가 농후하다.¹⁴⁾ 여기에서 과연 어디까지가 국가의 책

죄이후 신분의 변화경험여부, 재범횟수, 시설내에서의 인간적 한계의 경험정도, 법과 사회에 대한 태도, 낙인인지, 범죄적 자아, 성격적 자아 등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는 이동원, “소년범죄자의 재범특성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 제15권 제2호, 2003, 358-359면.

- 10) 소년원 출원자 9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년기 범행횟수가 많을수록 성인범죄자로 발전한 비율이 높고, 최초범행에서 5차범행까지 폭력범죄를 1회 이상 저지른 적이 있는 자 가운데 차후범죄가 폭력범죄인 비율이 51.5%로 진문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는 이순래, “소년범죄와 성인범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8호, 1996, 53-54면.
- 11) 일진형 폭력집단이 조직폭력배의 주요한 충원통로라는 지적은 이동진, 청소년 폭력집단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36면.
- 12) 고등학생 4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소년폭력은 비행의 하위문화에 의해 설명되고, 특히 또래집단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문성호, “청소년폭력과의 폭력비행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9권 제3호, 2002, 156면.
- 13) 유평수, “중학생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의 효과분석”, 청소년학연구, 제12권 제2호, 2005, 73면.
- 14) 범죄자에 대한 과도한 국가적 개입은 범죄자를 사회적으로 적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그릇된 자아관념을 형성케 함으로써 결국 또 다른 범죄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견해는 김재봉, “소년경찰과 다이버전”, 형사정책, 제17권 제1호, 2005, 34면.

임인가, 다시 말해 국가의 역할과 그 한계는 어디인가가 문제된다. 따라서 소년폭력 내지 폭력소년의 문제를 흔한 형사사건의 하나로 간주하여 손쉽게 처리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를 외면하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매우 위험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2. 형사사범의 개입과 자제

본디 형사사범기관의 임무는 사후적인 단속과 처벌이 원칙이다. 이는 소년폭력과 관련해서도 동일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찰¹⁵⁾과 검찰¹⁶⁾은 예방을 기치로 소년폭력의 사전차단을 위한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고, 상당한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¹⁷⁾ 물론 여기에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소년보호협회, 자녀안심학교학교보내기운동국민재단,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등의 민간단체의 협력이 수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년폭력 예방활동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라도 소년 폭력사건의 처리가 신속하고도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¹⁸⁾

15) 경찰은 ① 청소년 고충상담실, ② 범죄예방교실, ③ 사랑의 교실, ④ 가출 청소년 찾기, ⑤ 명예경찰 포돌이·포순이 소년단 등을 통하여 소년을 선도·보호하고 있다. 상세히는 경찰청, 경찰백서, 2006, 168-169면, 171-173면.

16) 검찰은 ①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② 재소자에 의한 비행소년 정신교육, ③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④ 학교담당검사제, ⑤ 우범소년 결연사업 등을 통하여 소년범죄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상세히는 대검찰청, 검찰연감, 2006, 413-417면.

17) 정부는 2005년 3월 「4대 폭력 추방 종합대책」을 내놓은바, 학교폭력 대책단에서는 학교 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교육 및 지원강화, 학교 및 지역사회내 상담·순찰 강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전문능력 제고, 학교폭력 집중단속기간 운영,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강화 등을 추진하였으며 학교의 불량서클과 조직폭력의 연대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백서, 2006, 314면.

18) 소년폭력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함에 있어 갈등의 지면에 있는 편견과 차별을 제거할 것, 학생들이 문제해결의 주체로 전면이 나설 것, 교사나 학부모의 변화를 먼저 이끌어낼 것 등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이동원, “미국의 청소년 폭력예방프로그램의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3호, 1999, 316-317면.

사실 모든 소년폭력사건이 형벌부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종결되거나 솟제 피해자, 학교, 소년보호단체 등에 의한 자율적인 해결에 맡겨지기도 한다.¹⁹⁾ 이와 같이 다양한 통로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형사사법기관으로서의 사건처리에 있어 재량의 행사와 선택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형사사법기관의 판단과 결정에 대하여 폭력소년 본인은 물론 소년폭력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개인, 집단, 단체로부터 불만과 항의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²⁰⁾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은 소년폭력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고유한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여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되, 다른 이해당사자의 입장과 자율적인 해결능력을 존중하는 가운데 소년폭력문제에 대한 최적의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형사사법기관이 소년폭력사건을 단순히 형사사건의 하나로만 파악하여 이를 처리하려 할 경우에는 날로 심각해지는 소년폭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도리어 형벌권의 남용이나 오용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위험이 따른다. 아울러 형사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소년폭력의 피해자에게 또 다른 희생을 부담하게 할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다.²¹⁾ 가해자이든

19) 최근 2007.1.26. 제정하고 9월부터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생이 교내에서 폭력이나 안전사고 등으로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하면 호송과 진찰, 검사, 치료, 간병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신설되는 학교안전관리공제회 기금에서 지급하여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소년폭력을 형사사건화하지 않고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 소년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소년 570명과 부모 310명을 조사한 결과 경찰과 검찰의 조사 단계에서 폭언·폭행 등 비인간적인 대우(20.9%)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고, 소년을 변호, 지원할 외부전문가(53.8%)를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바라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남미애, “소년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교정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1권 제3호, 2004, 166-167면.

21)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고소장의 접수 거부, 피해자에 대한 중복 조사, 피해자측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생생한 실례는 조정실, “피해자지원 왜 필요한가 - 피해자의 목소리

피해자이든 소년이 형사절차와 관계된 경우 소년의 권익을 특별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²²⁾

소년이 폭력행위를 저질러도 그것이 만약 형사사법기관의 통제망에 걸려들지 않으면 이른바 “사건화”되지 않고 그냥 유아무야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형사사법의 망에 걸려든 폭력소년이라도 모두가 동일한 절차와 단계를 거치는 것은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소년사법은 이원적 구조를 채택하여 일반적인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소년보호절차라는 특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년사건을 형사사건으로 또는 보호사건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소년폭력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소년폭력사건이라 할 때 형사사법기관이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인식하는가를 중심으로 논의의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먼저 소년에 의한 폭력의 행사가 어떠한 경우에 형사사법의 장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되는가를 형벌법령과 판례를 통하여 분석한다. 여기에서 단순한 일탈이나 비행과는 구별되는 현행법상 폭력범죄의 범위와 유형을 확인하고 그 성립요소를 구명하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의 공식통계에 나타나는 소년폭력사건의 발생 및 처리실태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소년폭력사건의 개념과 범위

소년폭력사건이란 폭력범죄의 주체가 소년인 사건을 일컫는다. 소년폭

리: 학교폭력 피해자의 사례”, 피해자학연구, 제11권 제2호, 237-238면.

22) 상세히는 최병각, “소년사법에서의 소년보호”, 형사법연구, 2007; 최병각, “형사절차에서 아동의 지위와 권익보호”, 조국(편), 형사절차와 취약계층, 사람생각, 2003, 71-115면.

력과 가장 밀접한 법률용어로는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폭력”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학교폭력”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폭력의 개념은 “폭력을 통해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바, 폭력의 피해자가 청소년이면 성인에 의한 폭력도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학교폭력은 “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초·중·고교 학생이라야 한다는 점에서는 제한적이지만, “상해·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 따돌림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로서 전형적 의미의 범죄로 볼 수 없는 “집단따돌림”과 “괴롭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²³⁾

이 글은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사건처리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년폭력사건의 개념은 현행 형벌법령에 따른 “범죄”의 성립여부와 관련지어 살피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폭력의 행사”가 범죄성립의 요소로 되는 모든 경우를 “폭력범죄”라 할 수 있다. 현행 형법은 제12조에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폭력”이란 표현을 쓰고 있을 뿐 따로 폭력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도 폭력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폭행(형법 제260조)과 협박(형법 제283조)이 가장 기본적인 폭력범죄라는 점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다. 또한 폭행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행위방법에 초

23) 기존 연구들이 학교폭력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지나치게 심각한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관점에서 학교폭력의 개념규정, 측정문항, 조사방법에 대한 통일된 척도를 개발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노성호, “학교폭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1호, 2004, 93면.

점을 두는 반면 상해(형법 제257조)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침해하거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 하여 행위결과가 중요하다는 점과 폭행을 통하지 아니한 상해가 가능하다는 점²⁴⁾에서 폭행과 상해의 구분이 문제되고 있지만, 상해 역시 폭력범죄의 하나이다. 이 밖에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모든 범죄가 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된다.

우리 입법자는 폭력범죄의 발생양상에 주목하여 특별법을 통하여 일정한 폭력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이나 질차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61년 제정)인바, 동법은 상습적으로, 야간에,²⁵⁾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 체포·감금(형법 제276조 제1항),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 주거침입·퇴거불응(형법 제319조), 강요(형법 제324조), 공갈(형법 제350조) 또는 손괴(형법 제366조) 등의 폭력행위를 가중처벌함과 아울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 가입, 활동 등 조직폭력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²⁶⁾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약취·유인(1973년 개정), 체포·감금(1983년 개정), 보복범죄(1990년 개정)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도입하고 있다. 나아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1990

24) 예를 들면 무형적 방법에 의한 상해, 부작위에 의한 상해, 자연력·동력 등을 이용한 상해, 성별의 감염 등이 있다. 오영근, “형법상 폭행의 개념”, 형사법연구, 제8호, 1995, 134면.

25) 2006.3.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된 폭처법에서는 주·야간 구별에 따른 법정형 구분이 폐지되었다.

26) 폭처법은 형법전의 규정으로 충분히 의율할 수 있는 전형적인 중복입법에 불과하고, 책임주의와 과잉금지 및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중형주의 입법의 전형이며, 범죄 규정간의 균형도 깨뜨리는 불균형적인 입법이기 때문에 폭처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박기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개정론과 폐지론 - 형사특별법의 전반적 정비의 관점에서”,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2006, 144면.

년 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년 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997년 제정), 「학교폭력에 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04년 제정) 등에서도 폭력범죄에 대한 특별한 대응수단을 장구하고 있다.

또한 형사실무에서 폭력범죄라는 용어는 나름의 기준에 따라 형사사건을 분류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 대검찰청에서 발행하는 「범죄분석」에는 재산범죄와 “강력범죄”를 구분하면서, 강력범죄의 하위범주로 살인, 강도, 방화, 강간의 흉악범죄와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유인, 체포·감금, 폭처범위반의 “폭력범죄”를 두고 있다. 법무연수원이 간행하는 「범죄백서」에서도 강력범과 폭력범으로 구별하고 있다. 경찰청은 살인, 강도, 강간, 절도와 더불어 “폭력”을 5대 범죄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무에서 통상 소년폭력사건이라 함은 소년의 행위가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유인, 체포·감금 또는 폭처범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데, 소년이 흉악범죄 내지 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와는 담당부서와 처리방식에 있어 사실상 차이를 두고 있다.²⁷⁾

한편 소년비행의 관점에서 청소년폭력 또는 학교폭력을 문제삼는 경우에는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괴롭힘, 따돌림, 금품갈취, 성폭력 등으로 나누고 있다. 소년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체로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을 동시에 조사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소년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구명한다는 측면에서 부모나 교사에 의한 폭력의 경험까지 조사범위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이는 아동학대와 체벌의 문제로 연결된다. 그러나 소년폭력사건은 소년이 폭력의 가해자로 등장하여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뜻하고, 따라서 적어도 형사사법기관의 통제망에 걸려드는 것

27) 경찰실무전서, 2000, 242면.

이 최소의 전제라 하겠다.

4. 소년사건처리의 절차와 기관

우리 형법은 14세 미만자를 일률적으로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9조). 즉, 14세 미만의 자이면 비록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다시 말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책임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범죄의 성립이 부정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²⁸⁾ 반면, 14세 이상의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여지없이 형벌권이 발동된다.

그런데 우리 입법자는 20세 미만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소년법을 제정함으로써 일반형사사법과는 분리된 소년사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²⁹⁾ 이에 따라 범죄행위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에는 형벌 및 형사절차에서 성인과는 다른 특별한 취급이 따르고, 더욱이 성인법과 달리 소년심판을 거쳐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게다가 고유한 의미의 형벌대상에서 배제되었던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까지 보호이념을 앞세운 소년사법의 망으로 들어오게 된다. 나아가 범죄행위가 없어도 이른바 우범사유와 우범성을 이유로 보호대상에 포함된다.³⁰⁾ 비록 소년사법이 성인에 비해 형벌의 완화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28) 아동권리협약 제40조 제3항 a에서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을 규정하고 있는바, 입법례에 따르면 14세(독일형법 제19조, 일본형법 제41조), 13세(프랑스형법 제112-8조), 12세(캐나다) 등이 채택되고 있고, 살인 등 중죄는 14세, 일반범죄는 16세(중국형법 제17조)로 구분되기도 한다.

29)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의 연혁은 최병각, “소년보호사건의 범위와 처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8, 42-61면. 최근의 소년법개정 움직임은 최병각, “소년법개정과 소년사법의 건전한 육성”, 형사정책, 제18권 제3호, 2007.

30) 우범소년까지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은 전체주의적 경향, 즉 행위자형법적 사고에 바탕한 범죄방지에의 사회적 관심이 극단화된 모습이라는 비판은 임상규, “소년범죄의 합리적 처리방안”, 형사법연구, 제17호, 2002/여름, 241면.

형벌권의 대상을 범죄소년만이 아니라 촉범소년과 우범소년으로 확장하는 측면이 있다.

우리 소년법은 소년보호절차와 일반형사절차의 병립을 전제하고 있지만 소년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이 처음부터 구분되어 각각 별개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의 진행에 따라 그 성격이 서로 바뀔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형사절차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사건이 소년심판청구를 거쳐 소년보호사건으로 될 수도 있고, 아울러 소년법원이 그 심판대상을 형사절차로 보낼 수도 있다. 때문에 소년보호사건의 범위를 해명함에 있어서 오히려 소년사건을 다루는 주체와 단계에 따라 그 사건이 어떠한 기준과 근거에 의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되는가, 아니면 형사사건으로 되는가를 밝히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³¹⁾

소년사건의 처리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비행소년을 발견한 때에는 소년법원에 통고할 수 있다(소년법 제4조 제3항). 경찰서장은 촉범소년·우범소년을 발견하면 직접 소년법원에 송치해야 하지만(소년법 제4조 제2항), 범죄소년을 검거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54조). 검사와 형사법원은 소년사건이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법원에 송치해야 하지만(소년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일반형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소년법원은 통고·송치된 소년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하여 대상자가 성인으로 판명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형사법원으로 이송하여 형사절차로 돌려보낼 수 있지만(소년법 제7조, 제49조 제2항, 제51조), 그 이외의 경우

31) 상세히는 최병각,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처리기준: 소년법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를 중심으로”, 이한교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0, 505-522면.

에는 소년보호절차를 진행하여 심리불개시(소년법 제19조), 불처분(소년법 제29조) 또는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으로 처리한다. 소년법원이 보호처분결정을 한 경우에는 보호처분의 변경(소년법 제37조)과 취소(소년법 제38조, 제39조, 제40조) 및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소년법 제43조)와 재항고(소년법 제47조)가 뒤따를 수 있다.

여느 소년사건과 마찬가지로 소년폭력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경찰과 검찰이 법원,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에 비하여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경찰은 소년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른바 훈방을 통해 그 처리를 자체적으로 종결짓기도 하고, 범칙금 통고처분, 즉결심판청구, 소년심판청구의 통로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통상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사사건으로 입건, 수사하여 그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기소여부의 결정에 대한 재량을 가질 뿐 아니라 소년법에 따른 소년사건처리절차의 일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소유예를 포함하는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처리를 종결지을 수도 있고, 공소제기나 소년법원송치를 통하여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구할 수도 있다.

Ⅲ. 소년폭력사건의 처리실태

1. 경찰의 소년사건처리

경찰은 매년 일정한 기간을 설정하여 지도교사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소년풍기사범 단속현황은 다음의

<표 1>, 학교폭력사범 단속현황은 다음의 <표 2>과 같다.

2005년에는 총 105,520명의 풍기문란사범을 적발하여 행위정도가 중한 156명을 즉시에 회부하고, 나머지는 가정이나 학교에 통보하거나 훈방하였다. 소년풍기사범 가운데 그 사유가 싸움이나 흥기소지³²⁾인 경우 폭력사범으로 입건 처리될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표 1> 경찰의 소년풍기사범 단속 현황

연 도	합 계	단속사유						
		음주흡연	싸 움	남녀혼숙	흥기소지	음란서적	약물남용	기 타
2003	105,714	35,482	34,786	552	184	413	125	34,172
2004	105,607	35,316	35,467	789	569	635	149	32,682
2005	105,520	35,702	37,548	667	273	765	68	30,497

자료: 경찰백서, 2006, 169면.

<표 2>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폭력서클로 411명, 폭력·갈취로 7,319명, 성폭력으로 169명을 검거하여 그 가운데 286명을 구속하였다.³³⁾

한편, 2004년에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500여만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체폭행 2.51%, 협박 피해 3.08%, 금품피해 4.22%, 집단괴롭힘 0.63%로 나타났다.³⁴⁾

32) 폭처법 제7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흥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3) 학교폭력에 대한 처방적 해소방안으로 신고율의 제고, 경찰의 단속강화, 유관기관간 협조강화를 제시하는 견해는 김충남, “학교주변폭력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8권 제3호, 1997, 86-88면.

34)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백서, 2006, 279면.

<표 2> 경찰의 학교폭력사범 단속현황

연 도	계		폭력서클			폭력·갈취		성폭력	
	검 거	구 속	서클수	검 거	구 속	검 거	구 속	검 거	구 속
2003	11,440	1,106	21	263	44	10,479	679	698	383
2004	7,274	606	22	265	45	6,527	308	482	253
2005	7,899	286	36	411	28	7,319	184	169	74

자료: 경찰백서, 2006, 226면.

2. 검사의 소년사건처리

2005년의 경우 검찰이 처리한 소년범죄자는 모두 67,478명이고, 그 처리 결과는 다음의 <표 3>,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3>에 따르면 소년범 67,478명 가운데 폭력범죄자는 21,009명 (31.1%)이고, 폭력범을 죄명으로 분류하면 폭행 455명, 상해 901명, 협박 13명, 공갈 238명, 폭처법 19,349명이다. 소년 폭력범의 처리실태를 보면 기소율이 12.1%, 소년보호송치율이 20.3%, 불기소율이 66.8%이다. 전체 소년범에 비하여 기소율은 4.7% 낮고, 소년보호송치율은 거의 같고, 불기소율은 6.8% 높다. 죄명별로 좀더 자세히 보면, 폭행범은 기소율이 5.9%, 소년보호송치율이 4.8%로 둘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불기소율이 88.6%로 높은데, 특히 공소권없음이 71.6%에 이르고 있다. 이는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로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상해범은 기소율이 16.3%, 소년보호송치율이 17.6%로서 전체 폭력범죄에 비하여 기소율은 조금 높고, 소년보호송치율은 조금 낮으며, 불기소율이 65.4%인데, 기소유예율이 61.5%에 이른다. 이는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기소유예로 처리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3> 검찰의 소년범 처리 현황 (2005년)

구분	계	기 소				소년 보호 승치	가정 보호 승치	불기소					기소 증지	참고인 증지
		소 계	공 판		약 식			소 계	기소 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구 속	불구속										
계	67,478	11,350 (16.8)	1,721 (2.6)	1,050 (1.6)	8,579 (12.7)	13,555 (20.1)	10 (0.0)	40,486 (60.0)	33,683 (49.9)	2,537 (3.8)	328 (0.5)	3,988 (5.8)	1,968 (2.9)	109 (0.2)
형법범	50,662	5,729 (11.3)	1,589 (3.1)	812 (1.6)	3,328 (6.6)	11,738 (23.3)	10 (0.0)	31,537 (62.3)	27,141 (53.6)	2,170 (4.3)	261 (0.5)	1,965 (3.9)	1,484 (2.9)	99 (0.2)
재산범죄	26,848	2,554 (9.5)	1,015 (3.8)	527 (2.0)	1,012 (3.8)	6,707 (25.0)	1 (0.0)	16,235 (60.5)	14,945 (55.7)	981 (3.5)	140 (0.5)	219 (0.8)	1,275 (4.7)	76 (0.3)
절 도	22,068	1,577 (7.1)	914 (4.1)	343 (1.6)	320 (1.5)	6,071 (27.5)	1 (0.0)	14,159 (64.2)	13,494 (61.1)	440 (2.0)	98 (0.4)	127 (0.6)	247 (1.1)	13 (0.1)
흉악범죄	1,549	423 (27.3)	363 (23.4)	45 (2.9)	15 (1.0)	638 (41.2)	-	462 (29.8)	190 (12.3)	132 (8.5)	6 (0.4)	134 (8.7)	15 (1.0)	11 (0.7)
강 도	66	197 (28.3)	177 (25.4)	20 (2.9)	-	338 (48.6)	-	149 (21.4)	82 (11.8)	63 (9.1)	2 (0.3)	2 (0.3)	11 (1.6)	1 (0.1)
폭력범죄	21,009	2,552 (12.1)	188 (0.9)	211 (1.0)	2,153 (10.2)	4,256 (20.3)	9 (0.0)	14,088 (66.8)	11,340 (54.0)	1,042 (5.0)	96 (0.5)	1,560 (7.4)	149 (0.7)	5 (0.0)
폭 행	455	27 (5.9)	2	4	21	22 (4.8)	1	408 (88.6)	63 (13.8)	12	2	326 (71.6)	2	-
상 해	901	147 (16.3)	12	3	132 (14.7)	159 (17.6)	5	589 (65.4)	554 (61.5)	23	10	2	1	-
협 박	13	3	-	-	3	1	-	9	3	2	-	4	-	-
공 갈	28	17 (7.1)	5	-	12	94 (39.5)	-	126 (52.9)	122 (51.3)	4	-	-	1	-
폭처범	19,348	2,335 (12.1)	159 (0.8)	191 (1.0)	1,985 (10.3)	3,959 (20.5)	3 (0.0)	12,902 (66.7)	10,596 (54.8)	994 (5.1)	84 (0.4)	1,228 (6.3)	144 (0.7)	5 (0.0)
과실범죄	108	17 (15.7)	1 (0.9)	2 (1.9)	14 (13.0)	10 (9.3)	-	81 (75.0)	31 (28.7)	4 (3.7)	13 (12.0)	33 (30.6)	-	-
치사상	52	6 (11.5)	-	1 (1.9)	5 (9.6)	1 (1.9)	-	45 (86.5)	10 (19.2)	2 (3.8)	2 (3.8)	31 (59.6)	-	-
특별법범	16,826	5,621 (33.4)	132 (0.8)	238 (1.4)	5,251 (31.2)	1,762 (10.5)	-	8,949 (53.2)	6,542 (38.9)	367 (2.2)	67 (0.4)	1,973 (11.7)	484 (2.9)	10 (0.1)

자료: 범죄분석, 2006, 494-495면 재구성

또한 과실치사상 52명의 소년범이 기소율 11.5%, 소년보호송치율 1.9%에 비해 불기소율이 86.5%, 특히 공소권없음이 59.6%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으면 고의범은 과실범에 비하여 기소나 소년보호송치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공갈범은 기소율이 7.1%에 불과한 반면 소년보호송치율은 39.5%로 아주 높고, 불기소율은 52.9%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강도범이 기소율이 28.3%, 특히 구속구공판율이 25.4%인 반면 소년보호송치율도 48.6%에 이르고, 불기소율은 21.4%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갈취나 강취냐에 따라 처리결과에 현격한 차이를 가져옴을 나타내고 있다. 폭처범법은 전체 폭력범의 92.1%에 이르는데, 기소율 12.1%, 소년보호송치율 20.5%, 불기소율 54.8%이다.

한편 검사가 소년범을 구약식으로 처리하는 비율은 전체 12.7%인데, 폭력범죄는 10.2%, 상해는 14.7%에 이르고 있다.³⁵⁾

<표 4> 검사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2005년)

연령별	계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5,511	609 (11.1)	1,247 (22.6)	1,436 (26.1)	1,284 (23.3)	703 (12.8)	232 (4.2)
죄명별	계	폭처범	절도	강도	사기	기타	
	5,511	1,666 (30.2)	2,713 (49.2)	68 (1.2)	17 (0.3)	1,047 (19.0)	

자료: 범죄백서, 2006, 190면, 191면.

35) 검사가 소년사건을 구약식으로 처리하고 법원도 소년법원송치로 적극 제지하지 않는 실무관행에 대하여 보호사건을 형사사건화하는 경향이라고 비판하는 견해는 이호중, “소년범죄자에 대한 경찰단계의 비범죄와 정책제안”,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3호, 2004, 12면.

<표 3>과 <표 4>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검사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리한 소년범은 5,511명으로 전체 소년범 67,478명의 8.2%, 기소유예로 처리한 소년범 33,683명의 16.4%에 해당한다. 선도유예된 소년범 가운데 폭처범위반이 1,666명(30.2%)으로 절도 2,713명(49.2%)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3. 형사법원의 소년사건처리

형사법원에서 형사공판사건 처리현황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형사공판사건 처리현황 (2005년)

구 분		구 속	불구속
제1심	합 계	59,986	166,532
	소년부송치	1,051	514
항소심	합 계	27,751	30,301
	소년부송치	52	16
상고심	합 계	3,234	8,014

자료: 사법연감, 2006, 568-569면.

<표 5>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제1심에서 구속 59,986명 중 1,051명, 불구속 166,532명 중 514명을 소년부송치로 처리했고, 항소심에서 구속 27,751명 중 52명, 불구속 30,301명 중 16명을 소년부송치로 처리했다. 소년부송치로 처리된 1,633명 가운데 1,103명(67.5%)이 형사사건으로 구속상태에 있다가 보호사건으로 바뀌게 되었다.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20세 미만자 재판현황은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20세 미만자 재판현황 (2005년)

합 계	사 형	무기형	정기형 (실형)	부정기 형	집행 유예	벌 금	선고 유예	무 죄	소년부 송치	기 타
4,296	-	-	18 (0.4)	659 (15.3)	1,223 (28.5)	420 (9.8)	48 (1.1)	14 (0.3)	1,565 (36.4)	349 (8.1)

자료: 사법연감, 2006, 570면.

<표 6>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제1심 형사공판사건에서 20세 미만자 4,296명 가운데 정기형(실형) 18명과 부정기형 659명, 총 677명(15.8%)이 구금형에 처해졌고, 이보다 집행유예 1,223명(28.5%), 소년부송치 1,565명(36.4%)이 더 많았다.

4. 소년법원의 소년사건처리

소년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접수구분별 접수현황은 다음의 <표 8>, 중요 죄명별 접수현황은 <표 9>와 같다.

<표 8> 소년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접수구분별 접수현황 (2005년)

계	형사법원송치	검사송치	경찰송치	소년법원이송	통 고
24,353	1,637 (6.7)	16,607 (68.2)	6,060 (24.9)	42 (0.2)	7 (0.0)

자료: 사법연감, 2006, 684면.

<표 9> 소년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중요죄명별 접수현황 (2005년)

계	폭처법	절 도	강 도	폭 행	상 해	성폭력	특가법	유해 화학	교특법	도교법	기 타
24,353	7,134 (29.3)	10,588 (43.5)	575 (2.4)	98 (0.4)	328 (1.3)	544 (2.2)	674 (2.8)	78 (0.3)	460 (1.9)	185 (0.8)	2,189 (9.0)

자료: 사법연감, 2006, 686-687면 재구성.

<표 8>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소년보호사건 24,353명은 검사가 송치한 16,607명(68.2%)이 2/3를 넘고, 경찰이 송치한 6,060명(24.9%)이 그 다음이고, 형사법원이 송치한 1,637명(6.7%), 소년법원이 이송한 42명(0.2%), 보호자 등이 통고한 7명(0.0%)으로 이루어졌다. <표 9>에 따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된 24,353명 가운데 폭행 98명(0.4%), 상해 328명(1.3%), 폭처법 7,134명(29.3%) 등 총 7,560명(31.0%)이 폭력소년이다.

소년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현황은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소년법원의 소년보호사건의 처분현황 (2005년)

죄 명	계	보호처분								불처분	불개시	기 타
		소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24,303	21,135 (87.0)	4,166 (17.1)	6,906 (28.4)	7,479 (30.8)	577 (2.4)	5 (0.0)	1,053 (4.3)	949 (3.9)	1,228 (5.1)	1,758 (7.2)	182 (0.7)
상 해	327	298 (91.1)	98 (30.0)	117 (35.8)	60 (18.3)	4 (1.2)	-	6 (1.8)	13 (4.0)	13 (4.0)	16 (4.9)	-
폭 행	98	81 (82.7)	37 (37.8)	16 (1.0)	23 (23.5)	-	-	-	5 (5.1)	10 (10.2)	7 (7.1)	-
준속 상해·폭행	14	14 (100)	-	6 (42.9)	-	-	-	-	8 (57.1)	-	-	-
폭처법	6,850	6,116 (89.3)	1,376 (20.1)	2,356 (34.4)	1,954 (28.5)	92 (1.3)	1 (0.0)	191 (2.8)	146 (2.1)	294 (4.3)	404 (5.9)	36 (0.5)

자료: 사법연감, 2006, 944-945면 재구성.

<표 10>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소년법원에서 처리한 24,303명 중 21,135명(87.0%)이 보호처분을 받았고, 2호·3호 보호관찰이 14,385명(59.2%), 1호 보호자등 위탁이 4,166명(17.1%), 6호·7호 소년원송치가

2,002명(8.2%), 4호·5호 사회내시설 위탁이 582명(2.4%)의 순이었다. 소년원송치 처분율을 보면 존속상해폭행이 57.1%로 매우 높고, 상해 5.8%, 폭행 5.1%, 폭처법 4.9%에 이른다. 보호자등 위탁율은 폭행 37.8%, 상해 30.0%인데, 폭처법은 20.1%에 머물고 있다. 한편 죄명이 폭행인 경우 불처분율이 10.2%로 전체 소년범의 불처분율 5.1%의 두배 수준으로 높다.

소년법원에서 보호관찰처분에 부가하여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명령한 인원은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소년법원의 사회봉사명령, 수감명령 처분현황(2005년)

사회봉사명령			수감명령		
계	2호	3호	계	2호	3호
5,325	1,800	3,525	3,295	1,508	1,787

자료: 보호관찰 통계연보, 2006, 20-21면.

<표 11>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소년범 24,303명 가운데 사회봉사명령은 5,325명에게, 수감명령은 3,295명에게 부과되었다.

5. 소년원의 보호소년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의 연령층별, 죄명별 현황은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에 따르면 2005년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총 1,543명인데, 이 가운데 상해·폭행이 197명(12.8%), 협박·공갈이 7명(0.5%)이다.

<표 12> 소년원 수용소년 연령층별·죄명별 현황 (2005년)

계	계	12세-13세	14세-15세	16세-17세	18세-19세	20세 이상
	1,543	83 (5.4)	400 (25.9)	706 (45.8)	331 (21.5)	25 (1.6)
절 도	597	33	180	281	103	7
성폭력	33	0	7	13	13	0
약물남용	11	0	2	5	4	0
상해·폭행	197	9	56	102	29	1
협박·공갈	7	1	1	2	3	0
강 도	89	5	19	46	18	1
기 타	632	35	135	255	161	16

자료: 범죄백서, 2006, 399면.

6. 소년교도소의 소년수형자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소년수형자의 죄명별, 형기별 인원 현황은 다음의 <표 13>과 같다.

<표 13> 소년수형자의 죄명별·형기별 인원 (2005년)

죄명별	계	절 도	사기·횡령	폭행·상해 ·폭처법	강간 등	강도 등	살 인	과실범	기 타
	427	115	6	31	92	111	41	7	24
형기별	계	무기	15년 이상	15년 미만	10년 미만	5년 미만	3년 미만	1년 미만	6월 미만
	427	1	8	23	567	99	183	42	3

자료: 범죄백서, 2006, 308면, 310면.

<표 13>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천안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소년수형자³⁶⁾는 427명인데, 그 가운데에서 폭행·상해·폭처법 위반이 31명(7.3%)

에 달한다.

IV. 형사사법기관의 책무와 민간참여

1. 범죄성립과 처리방식

소년폭력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그것이 범죄로 되는가, 특히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이른바 협의의 폭행에 이르지 아니하면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성립하지 않는다.³⁷⁾ 또한 상대방이 시비를 걸면서 멱살이나 팔을 잡는 등 부당한 공격을 하는 경우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형법 제20조)로서 역시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³⁸⁾ 그리고 폭행을 함에 있어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동원하면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가 아니라 곧바로 폭처법위반(제3조)에 해당한다.³⁹⁾ 한편 어떤 결과가 발생해야 “생리적 기능훼손”으로 상해죄(형법 제257조)가 성립하는지 문제되고,⁴⁰⁾ 가해자에게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

36) 소년교도소는 천안과 김천 2개소가 있었으나 2004.12.31.부로 김천소년교도소가 김천교도소로 변경되고, 이후 소년수형자는 천안소년교도소에 통합수용되었으며, 여자소년은 일반교도소내 여자수용시설로 분계된 장소에 수용하고 있다.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6, 307면.

37)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대문을 발로 찬 것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1991.1.29. 90도2153. 나아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난폭한” 유형력의 행사로 좀더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영근, “형법상 폭행의 개념”, 132면.

38) 대판 1990.1.23. 89도1328.

39) 이재상, 형법각론, 제5판, 박영사, 2004, 65면.

지, 아니면 과실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상해죄, 폭행치상죄(형법 제 262조) 또는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가 성립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범죄성립 여부에 관한 최종적 판단은 법원의 확정재판에 달려있지만 사건 발생의 초기에 경찰이나 검사가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가에 따라 실제 그 사건의 처리방식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폭행죄나 과실치상죄로 파악하면 반의사불벌죄(제260조 제3항, 제266조 제2항)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리(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해야 하는 반면, 상해죄나 폭처법위반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아가 공식적 처리절차를 밟느냐, 아니면 훈방(경찰)이나 불기소(검사)로 끝내느냐 결정에 있어서는 폭력소년의 속성보다 폭력행위 자체의 내용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형사사법기관의 모든 종사자가 정확한 법지식을 갖추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다이버전과 민간참여

소년사법 내지 형사사법의 실무에서 경찰은 소년경찰직무규칙(경찰청예규)이나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에 따라 절대 다수의 소년을 “훈방” 또는 “선도보호”로 처리하고 있고(표 1), 검사는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과 소년선도보호지침(법무부훈령)에 근거하여 적잖은 소년사건을 “선도유예”로 처리하고 있다(표 3). 이러한 처리방식은 공식적 사법처리에 따른 낙인효과를 피하고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으로 “다이버전”으로 일컬어진다.⁴¹⁾

40) 실신케 한 것이나 수면장애를 일으킨 것은 상해에 해당한다. 대판 1996.12.10. 96도 2529; 대판 1969.3.11. 69도161.

사실 소년사법 자체가 일종의 다이버전이고, 비행소년에 대한 다이버전의 필요성은 매우 많이 강조되고 있다.⁴²⁾ 그런데 소년사건을 다이버전으로 처리함에 있어 그 권한에 관한 명문의 법률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경찰의 훈방권과 관련하여 즉결심판절차법 제3조 제1항⁴³⁾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⁴⁴⁾ 또는 제5호⁴⁵⁾를 원용하기도 하고, 검사의 선도유예권한은 보호관찰법 제15조 제3호에 근거지우려고도 한다.⁴⁶⁾ 최근의 소년법개정논의에서도 경찰과 검사의 다이버전에 관한 권한규정의 신설을 두고 여러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⁴⁷⁾ 생각건대 “수사권 독립” 내지 “수사지휘권 확보”를 둘러싼 검경간 논의의 심각성을 고려하더라도 소년사건처리절차에 있어서는 경찰에게도⁴⁸⁾ 검사에게도 사법처리의

41) 다이버전의 개념, 목적, 평가 및 쟁점에 대하여는 오영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6권 제4호, 1995, 83-87면.

42) 소년사건의 다이버전 전략이 소년법의 보호이념에 부합한다는 견해는 이진국, “소년 다이버전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3호, 2006, 71-72면.

43) 경찰서장에게 즉결심판청구권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과 형사소송법상 기소재량이 준용된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문성도, “과출소장 훈방권의 법적 근거”, 경찰대 논문집, 제15집, 1995, 710-717면.

44)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처리는 수사 차원이 아니라 범죄예방활동에 해당한다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호중, “소년범죄자에 대한 경찰단계의 비범죄화 정책제안”, 37면.

45) 경찰의 소년사건에 대한 단순 다이버전은 헌법상 비례성원칙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고, 개입형 다이버전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개괄적 수권조항을 근거삼을 수 있다는 견해는 김재봉, “소년경찰과 다이버전”, 형사정책, 제17권 제1호, 2005, 40-43면.

46) 보호관찰소 선도유예의 경우 보호관찰법상의 근거규정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으로 충분한 법률상 근거를 갖춘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있다는 견해는 오영근, 소년사법절차상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방안, 국가인권위원회, 2002, 13면.

47) 경찰의 다이버전 권한을 소년법에 명문화하자는 주장은 이호중, “소년범죄자에 대한 경찰단계의 비범죄화 정책제안”, 38면; 강영철, “소년사건처리절차의 현황과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제1호, 1999, 110면; 최병각, “소년보호사건의 범위와 처리에 관한 연구”, 109면; 김용우, “소년비행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1994, 113면. 검사의 다이버전 권한을 소년법에 명문화하자는 주장은 이진국, “소년 다이버전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92면.

48) 경찰의 선도조건부 훈방은 현행 수사구조의 틀을 존중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이진국, “소년 다이버전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91면. 검찰에서 소년사건처

중지와 적정한 개입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보다 유리할 것이다.⁴⁹⁾ 다만 다이버전에 대한 사전·사후 통제장치를 마련해두어야 할 것이다.⁵⁰⁾

소년에 대한 개입형 다이버전의 실시에 있어 형사사법기관만으로는 소년에게 필요한 처우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민간의 자원봉사자의 협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고,⁵¹⁾ 실제 현장에도 다양한 이름의 자원봉사자가 형사사법기관과 연계하여 소년선도에 참여하고 있다.⁵²⁾ 이러한 민간참여가 성공을 거두려면 각각의 자원봉사자의 열의와 능력에 더하여 그 조직화가 무척 중요하다. 이 경우 자발성과 자율성이 최

리지침을 제정하여 경찰에 의한 소년풍기사범의 단속과 처리를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동기, “소년사범의 현실과 문제점(하)”, 법조, 1988/7, 37면.

49) 소년법원 판사에게도 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의 결정을 하면서 선도보호를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윤용규/최종식, “우리나라 소년사범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일고찰”, 형사정책연구, 제11권 제4호, 2000, 70면; 오영근, “선도조 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113면.

50) 경찰 다이버전에 있어서 ①20만원 이하의 벌금사건,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된 사건, 친구들과 어울려 호기심으로 한 사소한 절도 등 경한 범죄일 것, ②체범위협성이 높지 않을 것, ③범죄혐의가 명백할 것, ④조사에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용되지 않을 것 등을 기준으로 예시하면서, 구체적 훈방기준과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견해는 김재봉, “소년경찰과 다이버전”, 51-53면. 또한 경찰 다이버전의 통제와 관련하여 경찰 서별로 선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이버전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되 통일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진지연, “경찰 다이버전의 도입필요성과 그 내용”, 형사정책, 제16권 제2호, 2004, 200-201면.

51) 국가의 발전과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과 민간부문의 역할이 상호 조화롭게 분담되어야 하고, 특히 민간부문이 동반자적 지위에서 능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는 정해룡, “소년보호정책의 현안과제와 발전방향”, 형사정책연구, 제11권 제4호, 2000, 102면.

52) 종전의 소년선도위원(선도유예), 보호선도위원(보호관찰), 갱생보호위원(출소자)이 1996년부터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법무부훈령)에 따라 범죄예방위원으로 통합되었고, 자원보호자(가정법원), 보호소년지도위원(소년원), 교정위원(교도소) 등의 자원보호자가 활동하고 있다. 최근 2007.1.26. 자녀안심국민재단, 범죄예방위원전국연합회, 보호소년지도위원전국연합회가 공동주관하는 청소년 드림(Dream) 1004 날개 후원사업이 출범·운영되고 있다. 중앙일보, 2007.1.26.

대한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은 결코 간과될 수 없다. 왜냐하면 특정 소년을 다이버전 프로그램으로 보내는 것도 다시금 공식적 사법처리로 되돌리는 것도 결국은 형사사법기관의 판단과 책임이기 때문이다.

V. 맺음말

궁극적으로 소년폭력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폭력 전반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소년이 폭력을 행사하여 문제가 될 때 그것을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소년폭력의 문제해결은 흔히들 말하듯이 모두가 나서야 한다. 다만 형사사법기관의 역할과 관련하여 폭력행위 그 자체에 집중하여 범죄 내지 비행으로 성립되면 형사사건이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에서부터 폭력소년과 그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폭력발생의 근원을 치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에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형사사법기관으로서 그 본연의 임무와 권한에 충실해야 하지만, 소년폭력의 예방과 폭력소년의 재사회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건 처리는 문제해결이 아니라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⁵³⁾ 이러한 맥락에서 소년폭력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하려면

53) 소년사법의 대상이 된 546명을 조사한 결과 경찰과 검찰의 소년사건처리과정에서의 처우형태가 폭력적, 비민주적, 비전문적, 불공정적 경향을 보일수록 대상소년의 정서적 반응은 분노, 불안, 억울함이 높으나 죄책감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는 홍봉선/남미애, “소년사법절차상의 처우와 정서적 반응 및 비행교정성과의 관계에 관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⁵⁴⁾와 연계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소년폭력사건의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폭력소년에 대한 처우이다. 최종적인 제재를 형벌로 하느냐, 보호처분으로 할 것인가가 우선적인 문제이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폭력소년의 재범을 막고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는 일이 급선무이다. 최근에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에서 보여주고 있는 개혁의 움직임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의 공식제재기관에 의한 폭력소년의 재사회화 노력은 나름의 강점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한계를 가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민간과의 연계가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는 것은 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시도에 다름 아니다.⁵⁵⁾ 그런데 보다 바람직하기로는 굳이 공식절차를 다 거쳐 낙인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제재수단을 통하여 재사회화를 도모하기 보다는 일찌감치 공식절차에서 배제하여 비공식적 처우프로그램에 맡기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고, 많은 소년보호단체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다이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유

조사연구: 김·경찰에서의 초기 사법처리경험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7권 제1호, 2000, 208-209면. 또한 홍봉선/남승규/남미애, “사법처리경험과 소속이 청소년의 스트레스 반응, 사회적 지지 및 교정성 반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9권 제1호, 2002, 45-69면.

54) 범죄행위로 인하여 파괴된 사회구성원 간 유대의 회복을 강조하는 회복적 공동체사법(Restorative Community Justice)에 입각하여 범죄사건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시민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처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호중, “소년범죄자에 대한 경찰단계의 비범죄화 정책제안”, 27면, 30면.

55) 교정복지적 차원에 입각한 소년사법체계의 확립이라는 맥락에서 소년사법 관련체계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조직간의 문제와 문제에 대한 공동노력에 대해 합의를 하고 서비스의 포괄성과 적합성을 위한 조정을 하고 각 체계들이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체계적, 전문적으로 협력, 지원, 조정할 수 있는 통합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남미애, “소년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교정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152-153면.

리한 현실적 토대라 하겠다. 폭력소년의 재사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종합적, 체계적 관점에서 최적의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⁵⁶⁾

형사사법기관의 입장에서는 폭력소년을 중심으로 사건처리를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소년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거두어선 아니 된다. 소년폭력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소가 형사사건화의 시발점이 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그 처리방향을 결정짓는 힘을 갖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더욱이 소년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소년인데, 이들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태도와 대우 여하에 따라 사건해결의 최종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이들이 형사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제2차 피해자화를 겪지 않도록 만반의 배려를 해야 한다.

그동안 소년비행과 소년사범의 영역에서 눈부신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론과 실무의 괴리, 원인과 대책의 절연, 국가부문과 민간부문의 충돌,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의욕과 현실의 간극 등이 꾸준히 문제되고 있다. 이 글에서 제기한 문제, 즉 소년폭력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며 나아가 민간소년보호단체와의 관계설정 은 어떠한가 하는가의 문제도 하루 이틀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첫걸음은 이미 내디뎠다. 앞으로도 소년폭력의 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6) 중앙 및 지방정부차원에서 다기관간 연계관련 및 협의체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년사범 관련기관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와 지역사회자원을 연결, 조정, 개발하는 전문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남미애, “소년사범처리과정 청소년의 교정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175-176면. 또한 범죄 내지 비행의 예방과 대체에는 지역사회의 수평적 연계와 정부와의 수직적 통합전략이 필요하다는 견해는 박정선, “학교의 지역적 특성과 청소년비행: 다수준 접근의 적용”, 형사정책, 제15권 제2호, 2003, 146면.

Roles and Limits of Criminal Justice Officers in the Handling with the Juvenile Violent Offenders

Choi, Byung-Gak*

The problems of juvenile delinquency, especially violence among students have recently been the hottest issue in Korea. The act of using physical force against another unlawfully with the intent to harm is a kind of crime. And diverse violent acts of juveniles call for the intervention of the criminal justice agencies. In fact violent juvenile offenders cause harms not only to the victims but also to themselves. In this context harsh punishment of juvenile violences cannot be a complete solution. It is important to correct the character of violent juveniles and change the surroundings related to juvenile violences. The necessity of diversion is emphasized in handling violent juvenile cases. The role of the police, the prosecutor, the court, the probation office, the juvenile institution would be vital with regard to organize all available resources in the community. The participation of parents, teachers, and volunteers in the community should be tied with the criminal justice agencies in order to beat the proliferation of juvenile violence in school and street.

* Professor of Law, College of Law, Donga University, Ph.D. in Law

324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2호(통권 제70호, 2007·여름호)

주제어 : 폭력소년, 소년재판, 소년범죄자, 디버전, 자원봉사자

Keywords : Juvenile Violence, Juvenile Justice, Juvenile Offender,
Diversion, Volunteer